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제조사·공급사 : 엘에스정보기술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협약 범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성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금11,852,000원(부가세포함, 천원미만절사)**) 대비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협 약 범 위>

구 분	협 약 내 용	수 량	기초금액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부문	• 서버 H/W 부문(OS 포함) 주운영서버, 통신서버, 정보제공서버, 외부연계서버	6식	11,852,731원
	• 서버 N/W 부문 방화벽, VPN,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4식	

2026 년 9 월 일

발주기관명 거 제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엘에스정보기술 ㈜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제조사·공급사 : ㈜모린정보기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협약 범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성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금53,815,000원(부가세포함, 천원미만절사)**) 대비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협 약 범 위>

구 분	협 약 내 용	수 량	기초금액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부문	• 응용 S/W 부문 - 운영서버, 통신서버, 정보제공서버, 외부연계서버 -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식	**53,815,000원**

2026년 9월 17일

발주기관명 거 제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모린정보기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제조사·공급사 : ㈜티아이에스에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협약 범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성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금5,866,000원(부가세포함, 천원미만절사))** 대비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협 약 범 위>

구 분	협 약 내 용	수 량	기초금액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부문	• 상용 S/W 부문 - DBMS Tibero 5 Enterprise Edition	1식	**5,866,080원**

2026 년 9 월 일

발주기관명 거 제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티아이에스에스 (인)